

①옵셋인쇄, ②경인쇄 단가계약서

제 1 조 (총 칙)

본 옵셋인쇄, 경인쇄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발주처” 이라 하고 (계약업체) 를 “계약상대자”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적 용)

이 조건은 “발주처”가 행하는 1천만원(VAT포함) 미만의 옵셋인쇄, 경인쇄 단가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조건 일부가 된다.

제 3 조 (적용범위)

- ① 계약건명 : 2024년도 옵셋인쇄, 경인쇄 단가계약
- ② 계약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
- ③ 계약금액 : 옵셋인쇄 및 경인쇄 기준요금에서 정한 금액(별첨 참조)

제 4 조 (작업착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타자방법은 “발주처”가 정한 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 품)

- ① 인쇄의 납품은 “발주처”가 정한 일자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교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원고교정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전 필히 요구부서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 ② 위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 완료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분할납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량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 총액의 1000분의 0.75

제 6 조 (원고 및 필름)

- ① “발주처”가 원고를 제공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원고와 타자된 원고 및 필름 등을 납품 완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원고에 의문되는 점이나 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해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정의 책임)

- ① 교정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② “발주처”가 교정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교정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8 조 (영업실태보고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코자 하는 경우
2. 영업을 휴업코자 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된 경우

제 9 조 (비밀보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인쇄물을 취급함에 있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비밀에 속하는 인쇄는 성실한 주의를 가지고 작업을 하여야 함은 물론 상기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인쇄후 반환한 원고외에 인쇄중 발생된 파지 등은 완전히 소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대금지불)

물품대금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후 “발주처”의 검수가 완료된 후 지불한다.

1. 납품서(거래명세서) 1부.
2. 견 본(책 자) 1부.
3. 청구서(세금계산서) 1부.

제 11 조 (계약해지 또는 해제)

- ①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출입업체 등록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1.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상대자”가 인쇄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조잡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의 “발주처” 문서에 대한 보관상태 또는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5.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물품대금을 과다청구 하여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영업장소를 당초 거래등록 공고 시 공지한 지역이외로 이전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연구원 발주부서로부터 납품한 인쇄물의 품질에 대하여 불만 등 이의제기를 받을 때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 ② “계약상대자”는 위의 해약 또는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위 1항에 의하여 해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검수가 끝난 분에 한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단가계약건과 관련한 재등록을 할 수 없다.
- ⑤ “계약상대자”가 상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제14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 12 조 (단가조정 및 환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단가 및 내역이 과다 책정되었음이 본 계약 체결 이후 또는 대금정산 이후라도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고의과다청구)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대금을 과다청구 수령한 것이 발견될 시는 즉시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보증금제출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정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기간 2024. 3. 1. ~ 2025. 2. 28.)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치 않았을 때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 (단가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별첨된 인쇄기준요금표에 의거 인쇄대금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예산 또는 인쇄물의 특성상 기준요금보다 감액이 필요할 시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발주의 예외)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외부기관 파견인력이 발주하는 인쇄물
2. 기획력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
3. 보안이 필요한 경우(보안인증 인쇄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발주함)
4. 출장지/현장 등 타 지역에서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
5. 다른 기관의 요청 또는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7 조 (연장계약)

- ① “발주처”가 산정하는 연장계약 기준요금이 기존계약과 동일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처”는 연장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약상대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계약 종료 7일 이전까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계약은 제1항의 조건하에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8 조 (기타사항에 대한 해석)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일

“발주처”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상 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표자 : 원장 이 상 목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보안확약서

본 서약인은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①옵셋인쇄, ②경인쇄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에 대해 계약 이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의 허락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만약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및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연구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

2. 본 계약의 결과물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계약이 완료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에 반납 및 파기하며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 ○○○ ○○○○○○

상 호 : ○○○○○○○○

대표자 : 대표이사 ○ ○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③복사 · 제본물 단가계약서

제 1 조 (총 칙)

본 복사 · 제본물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발주처”라 하고 (계약업체명)를 “계약상대자”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적 용)

- ① 이 조건은 “발주처”가 행하는 1천만원(VAT포함) 미만의 복사 · 제본물 단가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 ② 복사 · 제본물로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는 기획 및 도안이 제외된 “발주처”의 읍 셋·경인쇄 발주를 수행할 수 없다.

제 3 조 (적용범위)

- ① 계약건명 : 2024년도 복사 · 제본물 단가계약
- ② 계약기간 : 2024. 3. 01. ~ 2025. 2. 28.(1년)
- ③ 계약금액 : 복사 · 제본 기준요금에서 정한 금액(별첨 참조)

제 4 조 (작업착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복사 방법은 “발주처”가 요청한 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 품)

- ① 복사 · 제본물의 납품은 “발주처”가 요청한 일자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 물품 납품 완료 이전에 생긴 복사 원본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한다.
- ③ 분할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량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원 고)

- ① “발주처”가 원고를 제공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원고는 납품 완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영업실태보고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코자 하는 경우
2. 영업을 휴업코자 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 (비밀보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복사·제본물을 취급함에 있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비밀에 속하는 인쇄는 성실한 주의를 가지고 작업을 하여야 함은 물론 상기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복사후 반환할 원본외에 복사중 발생한 파지 등은 완전히 소각하여야 한다.

제 9 조 (대금지불)

물품대금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후 “발주처”의 검수가 완료된 후 지불한다.

1. 납품서(거래명세서) 1부.
2. 견 본(책 자) 1부.
3. 청구서 1부.

제 10 조 (계약해지 또는 해제)

①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출입업체 등록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1.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상대자”가 인쇄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조잡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의 “발주처” 문서에 대한 보관상태 또는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5.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물품대금을 과다청구 하여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영업장소를 당초 거래등록 공고 시 공지한 지역이외로 이전하는 경우

- 7.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연구원 발주부서로부터 납품한 인쇄물의 품질에 대하여 불만 등 이의제기를 받을 때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8.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 ② “계약상대자”는 위의 해약 또는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위 1항에 의하여 해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검수가 끝난 분에 한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단가계약건과 관련한 재등록을 할 수 없다.
- ⑤ “계약상대자”가 상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제14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 11 조 (단가조정 및 환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단가 및 내역이 과다 책정되었음이 본 계약 체결 이후 또는 대금정산 이후라도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고의과다청구)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대금을 과다청구 수령한 것이 발견될 시는 즉시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 13 조 (단가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별첨된 복사단가요금표에 의거 복사 대금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예산 또는 인쇄물의 특성상 기준요금보다 감액이 필요할 시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보증금제출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정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기간 2024. 3. 1. ~ 2025. 2. 28.)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치 않았을 때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 (발주의 예외)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외부기관 파견인력이 발주하는 인쇄물
2. 보안이 필요한 경우(보안인증 인쇄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발주함)
3. 출장지/현장 등 타 지역에서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
4. 다른 기관의 요청 또는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
5.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6 조 (연장계약)

- ① “발주처”가 산정하는 연장계약 기준요금이 기존계약과 동일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처”는 연장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약상대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계약 종료 7일 이전까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계약은 제1항의 조건하에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에 대한 해석)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발주처”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상 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표자 : 원장 이 상 목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보안확약서

본 서약인은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③복사·제본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에 대해 계약 이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의 허락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만약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및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연구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

2. 본 계약의 결과물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계약이 완료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에 반납 및 파기하며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 ○○○ ○○○○○○

상호 : ○○○○○○○○

대표자 : 대표이사 ○ ○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